졸업 및 조기졸업 관련 규정

학칙

제25조(수업연한)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. 다만,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의해 달리 정해진 때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(조기졸업).

제26조(재학연한) 학사과정에 재학연한을 둔다.

제42조(학위수여) 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
② 학사학위에는 대학·학과별로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명칭을 부여한다.

학사운영규정

제36조(수업연한)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(授業年限)4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공과대학 건축학과: 5년
2. 의과대학: 의예과 2년, 의학과 4년

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다만, 공과대학 건축학과, 의과대학, 사이버국방학과, 약학대학은 예외로 한다.

제37조(재학연한)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(在學年限)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.

② 재입학생·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.

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(부)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.

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.

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, 졸업논문, 영어성적, 한자인증 등 학과(부)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.

제56조(졸업의 기본요건) ① 학사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.

1. 졸업요구학점의 취득
2. 각 학과(부)에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
3. 제1전공의 기본전공과 제2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(또는 심화전공 이수)
4. 전체 성적평점평균 1.75 이상
5. 그 밖에 학과(부)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

②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. 다만, 복수전공학생이 휴학 중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.

제57조(졸업요구학점) 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졸업요구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.

② 특정 대학(학부) 또는 학과(부) 소속 학생의 졸업요구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범대학: 140학점
2. 공과대학 건축학과: 165학점
3. 의과대학 의학과: 172학점
4. 사이버국방학과: 150학점
5. 약학대학: 155학점

제58조(조기졸업: 일반) ① 학칙에 따라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초 소정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조기졸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(괄호안의 학점은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(학부)·학과(부)의 경우임).

1. 학기마다 17(18)학점 이상 취득할 것(단,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)
2.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(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(부): 112학점, 140 이상인 학과(부): 117학점)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.00 이상일 것
3. 제2항 제2호의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

③ 조기졸업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
2.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성적평점평균이 4.00 이상일 것

④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공과대학 건축학과, 의과대학, 사이버국방학과, 약학대학 소속 학생
2. 편입학생
3.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

제59조(조기졸업: 특별) 제58조의 조기졸업 외에 국가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유형의 조기졸업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2014년 1월 1일 기준

학 적 · 수 업 지 원 팀